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집행·보호관찰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11까지)
-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 재난으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및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육·관리·보호되고 있는 동물을 구조·보호대상에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현장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2026년 4월 27일 이전 농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일정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34조 및 제37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모든 ‘사법경찰관’이 아닌 동물학대 방지 사무를 수행하는 ‘동물보호관’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

- 안 제16조의4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동물사육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항),

‘사법경찰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항).

-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88조¹⁾에서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 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 「동물보호법」 제88조(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이하 “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보호관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²⁾ 제5조에서는 동물보호관 중에서 사법경찰관 또는 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등,

현행법상 동물학대범죄 사건 및 동물보호 사무에 전문성이 있는 ‘동물보호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대안에서는 개인에게 침익적인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 신청을 모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면서 현행 법체계 및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도록 ‘사법경찰관’을 ‘동물보호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16조의4(동물사육 금지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 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서, 동물학대범죄	제16조의4(동물사육 금지명령의 청구) ① (개정안과 같 음)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42의2. 「동물보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신 설>	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에 대 하여 동물을 사 육, 관리 또는 보 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동물사육금지명 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② 동물보호관-- ----- ----- ----- ----- -----. ③ ~ ⑤ (생 략)

2.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 등을 격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 동행규정 등 규정 삭제

○ 안 제34조제2항은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제1항제2호)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걱정하게 치료·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제1항제3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그런데, 안 제34조제2항에 대하여 경찰청은 「동물보호법」상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는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이 하는 행정처분이고, 수사기관의 현장 출동(동행)은 범죄사실의 확인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수사 활동인바,

개정안과 같이 행정처분에 수사 인력을 사실상 상시 결합하면 민생범죄 수사 등 대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기관 간 상호협력 요청과 그에 따른 협조에 관한 일반 규정인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제8조)³⁾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 규정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⁴⁾.

3)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4) 경찰청은 개정안의 규정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는 동물의 사육 방법 및 위생·건강·영양 상태 등을 토대로 학대 사실을 판단해야 하는바,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함이 적합하다는 입장임.

- 경찰청의 의견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4조(동물의 구 조·보호) ① (생 략) <u><신 설></u>	제34조(동물의 구 조·보호) ① (생 략) <u>② 시·도지사</u> <u>시 장·군 수·구 청</u> <u>장은 제1항제2호</u> <u>및 제3호에 해당</u> <u>하는 동물을 학</u> <u>대 행위자로부터</u> <u>격리하기 위하여</u> <u>필요한 경우 수</u> <u>사기관의 장에게</u> <u>동행하여 줄 것</u> <u>을 요청할 수 있</u> <u>으며, 그 요청을</u> <u>받은 수사기관의</u> <u>장은 정당한 사</u> <u>유가 없으면 사</u> <u>법경찰관리가 현</u> <u>장에 동행하도록</u> <u>하여야 한다.</u>	제34조(동물의 구 조·보호) ① (개정 안과 같음) <u><삭 제></u>
<u>②</u> ~ <u>④</u> (생	<u>③</u> ~ <u>⑤</u> (현행	<u>②</u> ~ <u>④</u> (현행과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략) <u><신 설></u> 제39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	제2항부터 제4항 까지와 같음) <u>⑥ (생 략)</u> 제39조(신고 등) ① ----- ----- ----- ----- ----- ----- ----- <u>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u> 1.2. (현행과 같 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같음) <u>⑤ (안 제6항과 같음)</u> 제39조(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개정안 과 같음) ④ ----- ----- ----- -----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 ----- ----- ----- ----- ⑤ 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 ----- ----- ⑤ (개정안과 같음)

3.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 시행일 조정

- 안 제37조의2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706호)의 내용이 대안으로 반영된 것임.

현재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협의·신고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입지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상태로, 지자체장은 법률을 위반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대안은 2026년 4월 27일 이전 농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⁵⁾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
- 5)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 그런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안) 부칙에서는 특례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안으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대안의 모든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됨.

안 제37조의2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안 제37조의2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는 단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제1조(시행일) ----- ----- --. <u>다만, 제37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전문위원 최 기 도)